계속비 사업승인(안) -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-

의안 번호 제70호

제출일자 : 2004. 12. 1

제 출 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사유

- 가.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6) 를 요하는 사업으로,
- 나.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.

2. 관련법규

- 가. 지방재정법 제33조 (계속비)
- 나.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(계속비 사업예산요구)

계속비 사업승인(안)

□ 목 적

본 사업은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남해안 연안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·적정처리하여 사천만 및 남해안의 수질을 보전

□ 관련법규

가. 지방재정법 제33조(계속비)

나.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(계속비 사업의 예산요구)

□ 사업개요

가 위 치: 사천시 축동면 탑리100(구 축동분뇨처리장 내)

○ 사업기간 : 2004 ~ 2006

○ 시행주체: 사천시

○ 총사업비 : 4,210백만원

○ 시행방법: 장기계속공사

○ 사업량 : -시설용량 =40 kℓ/일

-부대시설 1식

□ 추진현황

○ 타당성조사 용역: 2003. 6.3 ~ 2003. 9.10

○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: 2004. 9. 22 ~ 2005. 5. 21

○ 설치인가 신청 : 2005. 6.

○ 공사착공 : 2005. 8.

○ 공사준공 : 2006. 12.

□ 사업비: 4,210백만원(국비 3,254 도비 114 시비 842)

가.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2004년 이전	2004년	2005년	2006년	비고
계	4,210	_	137	965	3,108	
국비	3,254	_	_	772	2,482	
도비	114	_	114	_	-	
시비	842	_	23	193	626	

나. 사업별 투자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사업비	비고
합 계	4,210	
공 사 비	3,970	토목·조경,건축,기계, 전기·계장공사
보 상 비	-	
설계 및 부대비	240	

□ 계속사업 이유

- 가.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수년도(2004~2006)를 요하는 사업으로,
- 나. 당해년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함.